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9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18590호)

가.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3.

다. 회 부 일 : 2026. 4.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단지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 8. (생략) <u><신설></u>	<u>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u>

<신 설>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와 지역단위 단기간의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검토 사항

- 2005년 10월 정부는 의료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출범하면서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이 집적된 의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3월 법률 제9035호로 제정·공포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각각 지정·고시하였음.

- 2010년 1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특성화 방안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운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설립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핵심 기반시설 건축공사를 개시하여 201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2025년 10월 기준 기업(183개사)·대학(6개교)·공공기관(25개소)·의료기관(2개소) 등이 2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있음.

- 참고로, 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점이 고려되어 2019년

4월 30일 법률이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제명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음.¹⁾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경과 >

- (2005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결정(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2007년 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확정(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8년 11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 (2009년 8월) 대구 신서지구, 충북 오송지구 2곳을 입지로 선정
- (2009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 (2010년 1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의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2010년 12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오송) 법인 설립
- (2011년 10월)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 착공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비·전임상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 (2013년 11월) 兩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인프라 준공
- (2019년 3월) 兩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기개발센터 GLP 시험시설 증축
- (2019년 12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완제의약품생산시설 증축
- (2022년 9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직장어린이집 준공
- (2022년 10월) 兩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임상시험센터 준공
- (2023년 4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동물모델평가동 준공
- (2024년 12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준공
- (2025년 3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기술 연구동 준공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2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라 함)를 국가 차원이 핵심 연구개발 거점으로 유지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첨복단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연구 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을 활용한 맞춤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가능하려는 것임.

1) 법률 제164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후략)

또한, 침복단지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첨단 의료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도결의원, 윤준병의원, 전진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이 2026년 9월 9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바, 동 대안에는 기존에 구축된 의료산업 분야 특화 단지등²⁾을 대상으로 지역침복단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과 침복단지 간의 연계·협력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신 설>	제6조의2(지역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u>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u>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생략)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생략)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⑤ (생략)	을 받아 단지등 중 의료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7.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계획 수립 절차와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 동 대안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중 신청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역첨복단지가 지정될 예정임.

< 주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특화 분야 및 근거 법령 현황 >

지역명	클러스터명	특화 분야	주요 근거 법령
홍릉	연구개발 강소특구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특구법
송도·시흥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대량 생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판교	테크노밸리	-	산업기술단지법
광교	테크노밸리	-	산업기술단지법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	-	-
춘천·홍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AI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바이오 신소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특구법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법
	글로벌규제혁신특구	AI 헬스케어	지역특구법
오창	과학산업단지	-	산업입지법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신약 및 BT 의료기기	첨단의료단지법
	소부장 특화단지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글로벌규제혁신특구	첨단재생바이오	지역특구법
대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혁신신약 R&D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연구개발특구	R&D	연구개발특구법
	글로벌규제혁신특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 제조	지역특구법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의료기기	지자체 조례
안동·포항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백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합성신약 및 IT 의료기기	첨단의료단지법
	연구개발특구	의료·헬스케어	연구개발특구법

지역명	클러스터명	특화 분야	주요 근거 법령
김해	연구개발 강소특구	의생명·의료기기	연구개발특구법
진주	생물바이오클러스터	-	지자체 조례
전주·정읍	의료기기·미생물 클러스터	의료기기 및 미생물	지자체 조례
화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백신 생산 및 면역치료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백신산업특구	백신	지역특구법
광주	과학산업단지	-	산업입지법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동 대안이 처리되는 경우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는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복단지로 지정 및 지원·관리하여 바이오헬스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다만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대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